

불용품 처분 규정

제정 : 1998. 6. 8

제 1 조(목 적) 이 규정은 불용품에 대한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무를 명확히 하여 본 병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(정 의)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.

1. 현재 사용가치가 없거나 유희물품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
2.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3.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4. 기타 폐품 및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는 물품
5.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비가 과다하여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물품

제 3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병원의 모든 부서에 적용한다.

제 4 조(절 차) ① 불용품의 처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.

② 각 부서가 불용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구입규정 제5조 2항의 비품보수. 교환의뢰서를 총무과에 우선 제출하고, 이를 접수한 총무과에서는 물품의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수리를 담당할 업체의 소견서를 작성.날인한 후 해당서류의 사본을 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전항에 의하여 불용품 판정을 통보 받은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처리의뢰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여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

④ 특별한 경우 물품을 관리 사용하는 각 부서에서 직접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총무과를 경유하고 병원장의 재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, 처분 완료 즉시 총무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장기적으로 방치되었거나 정리되어지지 않은 불용품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, 매각 또는 폐기등의 사유를 기입한 조서(별지 제2호 서식, 별지 제3호 서식)에 의해 병원장의 재가를 얻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.

제 5 조(승인 권한) ① 불용품 처분 예정 가격이 100만원 이상일때에는 병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
② 불용품 처분 예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일 때는 사무국장이 전결한다.

제 6 조(처 분) 불용품의 처분 대금은 병원 세입 예산중 불용품 매각 수입과목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대장의 정리) 불용품으로 처분된 물품은 비품대장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장의 재가를 얻어 시행한

4-2-6. 불응품처분 규정

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